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

제정 2019. 12. 13 조례 제1987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,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,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식생활"이란 식품의 생산, 조리, 가공, 식사용구, 상차림, 식습관, 식사예절,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·무형의 활동을 말한다.
 - 2. "식생활 교육"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 - 3. "전통 식생활 문화"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 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.
 - 4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 - 5. "어린이집"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용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, 어린이·청소년·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가정, 학교, 지역,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)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

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

- 이해,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,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 식 조리기술 보급,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 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.
-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 및 친환경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, 학교 및 관련 기관·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, 농어업인, 식품관련 종사자, 식생활 관련 단체,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용인시 전역을 대 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.
-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, 지역 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) ① 시장은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(이하 "법" 이라고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용인시 식생활 교육 계획(이하 "교육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
 - 2. 가정, 학교,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
 - 3.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 - 4.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에 관한 사항
 - 5.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6.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7조(식생활 교육의 평가)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

- 하여 평가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,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목표설정의 적절성
- 2. 목표 달성도
- 3.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
- 4. 추진사업의 적절성
- 5.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- 제8조(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,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 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·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3명
 - 2.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실·국·소장
 - 3.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, 전문가
 - 4.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

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

- 5. 식품관련단체 대표
- 6. 소비자단체 대표
- 7. 용인시 관내 학부모 대표
- 8. 식생활 교육 관련기관 공무원
- 9.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0조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지정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,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식 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
 - 2. 식생활 관련 인력 교육 등 지원
 - 3.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 제공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

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